

2021년 작은도서관 「책친구」 지원 시행 작은도서관 및 책친구 공모 안내

문화체육관광부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「2021년 작은도서관 책친구 지원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 작은도서관 및 책친구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I 사업 개요

□ 사업 목적

-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·운영 능력이 부족한 작은도서관에 책친구를 지원하여 양질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작은도서관 활성화

□ 사업 개요

- (사업명) 2021년 작은도서관 「책친구」 지원
- (사업기간) 2021. 5월 ~ 10월(6개월)
- (사업대상) 작은도서관, 책친구*
 - *작은도서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·운영할 수 있는 자
 - 예) 사서, 은퇴교사, 독서문화기획자 등
- (주최/주관) 문화체육관광부 / (사)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
- (사업내용) 전국 작은도서관에 책친구 지원
 - 책친구 활용한 작은도서관 특화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·운영

II 신청 안내

□ 신청 및 접수

- (신청기간) 2021. 3. 25.(목) ~ 4. 8.(목) 18:00
- (신청대상)

구분	자격요건
작은도서관	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전국 공·사립 작은도서관 (우대) ① '19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우수 작은도서관 ② 문화체험 기회가 부족한 농산어촌 등 문화소외지역 작은도서관 (제외) ① '20년 작은도서관 책친구 지원 선정 작은도서관 ② '21년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선정 작은도서관
	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자 예) 사서*, 은퇴교사, 독서문화기획자* 등 * 작은도서관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자 * 급여받는 사서 제외
유의사항	※ 작은도서관에서 책친구 선발하여 지원해야 함

○ (신청방식) 1차와 2차 모두 신청해야 접수 완료

- (1차) (사)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홈페이지(smalllib.org)의 공지사항 “2021년 작은도서관 책친구 지원 모집” 공고 1차 신청 바로가기 통해 신청
- (2차) 전자우편(kokidlib@hanmail.net, 사업신청서 첨부) 제출
 - * 메일 제목 ‘지역명_○○도서관’. 예) 경기도_가나다작은도서관

○ (제출서류)

- ① 시행 작은도서관 신청서
- ② 도서관 등록증 사본(공립은 상위기관 공문으로 대체 가능)
 - *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은 인정하지 않음
- ③ 책친구 신청서
- ④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계획서(※ 'IV. 프로그램 운영지침' 참조)
- ⑤ 책친구 이력서
- ⑥ 책친구 자격증 사본(해당사항 있을 경우)

- (책친구 업무) 월 4회(8시간)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
 - 작은도서관 특성 고려한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·운영
 - 작은도서관이 독자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독서문화 프로그램 기획·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 및 지원
 - 시간당 5만원(월 40만원, 교통비·재료비 포함) 강사료 지급

III 시행 작은도서관 선정 안내

- (선정발표) 2021. 4. 16.(금) 17:00 /
(사)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홈페이지(smalllib.org)
- (문의) (사)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책친구 사업담당자
☎ 02-441-5933 (통화 가능 시간 10:30~17:00)

IV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지침

□ 운영지침

- (계획 수립) 총 48시간(월 4회, 8시간)
 - 작은도서관 실정에 따라 자유롭게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되, **공통주제(8시간)는 반드시 포함**
 - 공통주제 **“작은도서관, 마음을 읽다”**
* 코로나 이후 힘들어하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책을 통해 위안을 얻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제공
- (운영방법) 아래 3가지 중 1가지 방법 선택하여 운영
 - ① 6개월 모두 공통주제
 - ② 1개월만(8시간) 공통주제, 5개월은 자유주제
 - ③ 매달 1차시(2시간)는 공통주제, 나머지 3차시는 자유주제

붙임 신청서(서식) 1부.